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물순환안전국

☐ 총 2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도시공원을 활용한 치수방재 인프라 확충	치수안전과
2	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완화	물재생시설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도시공원을 활용한 치수방재 인프라 확충 (치수안전과, '25. 3. 28.)	□ 현황 ○ 기후변화 심화로 극한호우(極限豪雨) 발생이 증가하면서 도심지 대규모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. ○ 도시지역은 다양한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진 상태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빗물저류조 등 치수 방재시설 설치에 필요한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. ○ 대안으로 도심지 곳곳의 공원은 치수 방재시설 설치의 최적지가 될 수 있음. □ 문제점 ○ 현행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상의 '방재공원'은 대피와 구호 목적의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침수피해 예방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, ○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엄격한 개발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방재 인프라 설치가 불가능함. □ 건의내용 ○ 방재공원의 개념을 치수 예방으로 확장하고,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치수 방재시설 설치 가능토록 행위 제한 규정 완화 □ 관련 규정 ○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7조	(국토교통부)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2.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완화 (물재생시설과, '25. 3. 28.)	☐ 현황 ○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만 신축 가능하나, 공중화장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 설치 불가함 ☐ 문제점 ○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내 한강공원 이용객이 2,000만 명에 달해 공중화장실 미확보시 상수원 오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☐ 건의내용 ○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공중화장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건의 ☐ 관련 규정 ○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1호	(환경부)